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0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7월 13일

발 의 자 : 이은미 의원

찬 성 자 : 김성기, 이창열
김광성, 남진삼
박춘희 의원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
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22년 7월 18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제출한 「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」 외 6건,
총7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
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심 사 제 획

1. 활동목적

-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
-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
-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22년 7월 18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- 이은미 의원, 김성기 의원, 이창열 의원, 김광성 의원, 남진삼 의원, 박춘희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고
2022. 7.18. (월)	제1차 조례 특위 (14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.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.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.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7.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.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.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	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